

# 文 “교회들 손배소 무분별, 비용담보 필요” 신청했지만 ‘기각’

## 4개 교회, 대통령 상대 손배소 제기 “근거 없는 대면예배 금지로 손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들이 대면예배 금지에 반발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소송”이라고 주장하며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문 대통령이 참진교회·서울에스라교회·예수비전교회·은평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비용담보제공은 원고가 패소했을 때 피고에 지불해야 할 소송비를 미리 공탁하도록 하고, 이 신청을 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담보 신청과 관련된 심리 외 다른 절차는 거부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내는게 원칙인

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도 재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지 않으면 피고는 승소하고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민사소송에서 근거 없는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8월 참진교회 등은 문 대통령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폐쇄할 목적으로 ‘비대면예배’라는 잘못된 방역지침을 발령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 제기”라며 소송비용담보 제공 신청으로 맞섰다. 문 대통령 측이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신청서에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 명예를 훼손하고 예배를 폐쇄하려 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만 있고 증명은 없다”며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참진교회 등이 손해와 문 대통령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 측은 재판에 이겼을 때 받을 소송비용 1080만원을 참진교회 등이 공탁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및 행정력의 낭비, 불필요

한 재판 진행으로 인한 소송경제 측면 등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은 문 대통령이 방역의 책임자이며, 전광훈 목사의 집회를 비판했던 점, 1심으로 소송이 끝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송비용 예납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본안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이다. 재판부가 원고들 소송 제기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한 재경지법 판사는 “소송비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선욱기자



**확진자수 살피는 송파구 관계자들**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741명으로 기록된 16일 송파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확진자수를 살피고 있다.

## 새벽 나주 아파트 불...2명 부상·20여 명 대피

**집 안방에서 ‘종이 태워진 흔적’**

16일 오전 3시 49분께 나주시 용산동 한 6층 규모 아파트 중 4층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주인 A(60)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고, A씨의 옆집에 사는 B(50)씨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같은 동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집 안방에서 종이 태워진 흔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범위반 ‘수두룩’

### 303건 부과 과태료만 8.4억원

지난 1월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 당국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이 무려 63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8억4000만원에 달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월26일까지 실시된 HDC현산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 사항은 총 636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동 화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부는 HDC현산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각 현장별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5일 이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636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306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이뤄졌다. 303건의 경우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전반적인 감독 결과 각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을 앞둔 시점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 적발됐

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도 19건 적발됐다. 또 위험성 평가, 산재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도 144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위반한 사항도 135건이나 발견됐다. 특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부실하게 이행해 적발된 사례도 10건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12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임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독 결과는 본사 차원에서 최고경영자가 주축이 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참고토록 본사에 통보됐다.

또 고용부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HDC현산 시공현장 4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살피기 위한 추가 기획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HDC현산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